

제41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상정된 안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2

(14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1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7개의 법률안 중 1항부터 4항까지가 체육계 인권침해 등 관련해서 유사한 법률안이고 나머지 3개가 체육진흥투표권이라든가 체육산업 등 관련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4항까지 먼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 바로 뒤쪽입니다. 페이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지 바로 뒤쪽에 보면 김선교 의원안은 인권침해 등 신고자 비밀보장 등에 대한 예외조항 등, 그다음에 황희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이나 이의신청 등, 진종오 의원안은 현장점검, 자료요청이라든가 인권감시관을 보호관으로 명칭 변경,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신동욱 의원안은 인권침해의 정의라든가 피해자 상환청구권, 징계 재심의요구권, 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권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각 개정안이 유사 중복된 부분도 있고 각자 상이한 꼭지도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두 장 넘기면 1페이지에 총괄 표가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 명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안에서는 인권침해 정의를 규정하면서 각 유형별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나 번, 문체부장관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권한에서 현장점검 시 협조요청, 통합정보시스템 자료제출 시 협조요청,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서 협조요청 대상 관계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 번,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이것은 지난번 8월 달 소위 때도 한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에 대해서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한 꼭지와 두 번째는 윤리센터 등 종사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과도하게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조항 대신에 징계요구 등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로 수정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마 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는 문제, 문체부에서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 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이의신청 절차 이것은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의 대상자를 당사자 중에서 피신고자도 포함하도록 할 것이냐가 주논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 번,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데 협행법에 이미 근거가 있고 상환청구권은 무죄추정 원칙 등과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체부장관에게 협행 징계요구권에 추가해서 권고·시정명령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리센터도 같이 합쳐서, 조치요구권이라고 개정안에서 명칭하고 있습니다. 윤리센터도 같이 조치요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치요구의 대상이 현재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행위인데 거기에 보고·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도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자는 수정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등이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장관의 보완요구권이라든가 윤리센터의 경우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의요구권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윤리센터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체부장관과 협의를 전제로, 현재 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징계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데 문체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징계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내부 규정에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요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금 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 그

부분도 좀 더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기금의 용도에 윤리센터 실태조사, 연구·조사 등 근거규정을 담는 내용이 있는데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추가로 나눠 드린 4-2부터 4-4는 각 의원님들이 낸 개정안의 여부를 포함해서, 수정안 제시한 것을 포함해서 일단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 꼭지별로 조금만 더 간단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길기는 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총괄 논의를 먼저 하시고……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예, 그러면……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설명이 너무나 과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고 가시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러면 총괄 설명은 끝났으니까 일단 꼭지별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꼭지, 5쪽입니다.

1-가,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등입니다.

신동욱 의원안인데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해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왼쪽입니다. 가나다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개정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조사 대상이……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1번 김선교 의원님 거부터 먼저 하고 가자고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러면 김선교 의원님 거,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예외조항……

○**소위원장 임오경**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전완희** 11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달에도 논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교 의원님과 추가적으로 진종오 의원님이 개정안에 내신 내용입니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권침해 신고에 대해서,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스 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든가 공익신고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도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는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및 신고·상담·임시 보호시설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조사 이후 후속조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밑에 보시면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등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자료 등 신고·상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이 되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든가 공익신고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도 업무상 비밀 보장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은 별도로 없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인 공무원 징계령 등을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등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대신에, 개정안은 현행대로 그냥 두고 18조의9가 조사결과에 대한 고발 및 징계요구 등의 사항인데 여기 5항을 신설하여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 등을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번은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고 2번은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조사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2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설명 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예, 그 꼭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18조의10은 18조의4와 달리 신고·상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입법례를 고려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치요구 시 제공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신고자의 동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등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업무 전반에 대한 비밀, 자료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진종오 위원** 약간 문구가 부담스러운 문구이긴 한 것 같아서 윤리센터 이사장님의 부연설명 같은 거 해 줄 수 있을까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입니다.

자료 제공에 관해서인데요. 국회에서나 사실 다른 곳에서 자료 제공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 요청을 했을 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어떤 때는 신고자가 오히려 제공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항도 설명드릴까요?

○**진종오 위원** 예, 2항.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다음, 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징계요청을 했을 때 공정위원회나 각 상별위원회에서 어떤 때 보면 증거자료나 조사기록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단체의 적절한 징계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는 조사기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사기록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조사기록을 적법하게 제공했으면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참고자료의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보장이 있는 한편에 업무 종사자의 비밀엄수의무도 함께 넣어서, 다른 입법례를 보면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나 진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취지에 동의는 하는데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한다든가 하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 법률의 입법례를 보면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보도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물론 동의한 경우라도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당연히 신고자가 2차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자들이 보통 언론에 보도하기를 원할 때는 이게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히려 신고자들이 이것을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기관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보도 가능하다고 봤었을 때 신고자가 본인의 어떤 부분들은, 동의를 물론 했지만 동의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부분들은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떤 부분들은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의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도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쟁점 사안이 되고 협안이 되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보도나 이런 것들에 관한 권한까지도 센터가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체육정책과장 김홍필입니다.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 또는 보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것을 윤리센터가 무조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만 어디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개는 하지만 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신고자의 동의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진행하면서 신고자 의사가 존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 동의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구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라는 한정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염려가 뭔지, 쟁점이 뭔지 파악이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신고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기관에서 봤을 때 2차 가해 염려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그건 신고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시해 주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것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전문위원님, 그리고 지금 여기 수정의견하고 개정안에 보면 수정의견에 18조의10 3항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러니까 개정안 '다만'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다만' 단서를 반영하지 않고 현행대로 그냥 두고 대신에 18조의9 5항에 징계요구할 때만 징계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현행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에서 징계요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내용 수준입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신고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비밀준수, 엄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100% 지켜진다고 하는 보장을 다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들이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종오 위원 그런 부분들은 윤리센터 내에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진종오 위원 그런 건 아예 기본적으로 내규에 있지 않아요, 큰 틀로 봤을 때?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진종오 위원 윤리센터 기본이 그런 거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김재원 위원 그런 건 법안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법에 별칙조항이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잠깐만요.

좋은데, 현재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지금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별칙조항으로 지금 새롭게 신설되려고 하는 여기에다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센터장님 아셨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박수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처벌조항 가지고,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범위가 넓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처벌조항 가지고 현재 신설되는 이러한 취지를 어겼을 경우에 그것이 커버가 다 되느냐 하는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벌칙조항이 직무상 누설에 관련돼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개정되면 그 부분도 보완해서 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게 보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전문위원 전완희** 제49조의2(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조항에 ‘18조의10 제3항—이 조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들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전체 의견에 저도 타당하다고 동의를 하고요. 이 법안의 취지는 100% 동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선교, 진종오 의원 두 분께서 발의하신 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완료된 이후라고 전제를 하시는 거지요? 그 중간은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취득할 수 있게 기관에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진종오 위원** 그렇게 가는 거지요.

○**배현진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설명하시다가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셔서……

○**김재원 위원** 보도까지 포함되는 걸로.

○**배현진 위원** 예, 보도까지 포함해서.

○**진종오 위원** 언론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 신고자 같은 경우 영향력이, 어쨌거나 언론의 힘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언론에 모든 게 공개가 되면 그 언론의 힘을 받고 국민들한테 또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하에 공개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종오 위원** 예, 신고자랑 같이 협의하에. 그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무상 비밀이라는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정해 놓지 않았고……

○**전문위원 전완희** 두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것,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필요한 법률 내에서……

○**배현진 위원** 요청입니까, 동의입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동의입니다.

○**배현진 위원** 정확하게. 먼저 제공요청을 기관이든 언론을 통해 받았을 때 신고자가 후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고자의 요청이 아니라?

○**전문위원 전완희** 예, 요청이 아니라 신고자가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경우에 그 건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든 상관없이 보도·공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체육단체

징계 내용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조사가 끝나고 징계요구를 할 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법을 자꾸 다시 살펴봤는데 4항은 뭐예요? 3항을 그대로 두고 5항을 넣는단 말이에요? 4항은 뭐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이게 지금 법을 네 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4항이 지금 뭘로 되어 있으냐고요, 개정하려고 하는 안의 4항이.

○**전문위원 전완희** 개정안의 4항은 다른 의원님 법안에 4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체계·자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5항이 된 겁니다. 위원님 논의결과에 따라서 다른 4항이 반영 안 되면 이게 4항이 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를 하나 들어 줘 보세요. 4항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전문위원 전완희** 64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 그런 부분들이 4항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있고. 그러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에 연동해서 5항이 새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18조의9 5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민형배 위원** 4항은 이렇고.

지금 5항이 65쪽에 있는 오른쪽 그거지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전문위원 전완희** 수정안은 새롭게 항이나 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 논의결과에 따라서 체계·자구로 재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3항의 단서조항을 없애는 대신 지금 5항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다른 조에서. 조가 다릅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18조의10하고 18조의9잖아요. 18조의9는 고발 및 징계요구예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에는 지금 1·2·3밖에 없고 18조의9 4항이 지금 말씀하신 64쪽의 맨 오른쪽 수정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18조의10 3항 단서조항을 없앤 상태로 두고, 그 말이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18조의10은 현행과 같이 두고.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보완하는 게 5항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렇습니다, 18조의9 5항.

○**민형배 위원** 그러면 18조의10 3항의 단서조항은?

○**전문위원 전완희** 안 건드리고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요.

18조의9는 고발 및 징계요구고 18조의10은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이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18조의10 3항을 개정안 보완,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그냥 18조의9 5항으로 대체한다?

○전문위원 전완희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해 줘야지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전완희 죄송합니다. 법안이 워낙 꼭지 수가 많고 복잡해 가지고……

○민형배 위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맞아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는 그려하지 아니한다'를 18조의9 5항으로 대체했을 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문위원 전완희 최소한으로 현행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민형배 위원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하고 조사기록……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아까 신고자의 적극적인 의사는 반영하지 못하는 건데? 신고자의 적극적인 의지, 즉 신고자가 동의하면 뭐든 공개할 수 있는 것하고 이렇게 내용을……

○전문위원 전완희 위원님, 두 꼭지인데요 그건 앞 꼭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조항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한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조항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2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형배 위원 알았어요.

○배현진 위원 지금 9개 꼭지별로 분류돼 있던 걸 1번부터 하려고 하니까 꼬여서 저희가 다 같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 말씀은 18조의10 3항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식을 18조의9 5항으로 대체했을 때 '신고자의 동의가 있으면'이라고 하는 신고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고자의 동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신고자의 동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18조의10 3항에 단서조항을 뒀서 개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신고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거잖아요. '공개할 수 있다'를 '동의가 있으면 공개한다'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주관적인 거 말고 윤리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 신고자의 적극적인 동의는 의미가 없다……

○전문위원 전완희 예, 위원님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도 되나? 그러면 신고자가 공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전완희 그 부분은 앞에, 위의 꼭지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지요. 어디 위의 꼭지요? 18항?

○전문위원 전완희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공개·보도할 수 있다.

○민형배 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입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18조의4 3항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 지금 다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검토 소위 자료 내용 순서에 입각해서 첫 번째로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예, 그렇게 가시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신동욱 의원안 제2조제11호의3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동욱 의원님께서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규정을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쪽 해서 밑에 여러 가지, 상해 폭행 등 폭력 행위 또 성적인 폭력 행위, 기타 인권침해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나열해 주셨는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신고·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두 범주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비리는 밑의 네모 박스에 있듯이 2조 11호의2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현행법 18조의3 3항 1호 각 목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예시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바로 또 6페이지 하단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군인권침해 정의조항을 참고하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들이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의견으로서 밑의 박스에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바로 뒤쪽 6페이지 하단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7호에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18조의3?

○전문위원 전완희 그 밑에 것,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것은 준용하려고, 차용하려고 이걸 해 놓으신 거고.

○전문위원 전완희 이 규정은 신설 규정입니다. 현행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여기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어떤 것을 인권침해라 하고 어떤 걸 차별행위라고 하는지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군 인권침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인권침해다, 차별

행위다 그러면 이러이런 행위를 인권침해, 이러이런 행위를 차별행위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가 그 규정이 있느냐고요. 인권침해라고 했어요. 차별행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인권침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차별행위라고 한다라는 규정.

○진종오 위원 위에 보면 가, 나, 다 해 가지고 지도자의 성폭력, 폭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민형배 위원 스포츠비리란? 이것은 스포츠비리인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체육정책과장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규정해 두지 않아도 헌법에 나와 있는 인권침해, 헌법에 나와 있는 차별행위를 그대로 그냥 준용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헌법 10조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전문위원 설명이 끝났는데 정부 의견은 지금 수정 수용으로 하신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수정 수용하는 것을 장미란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례를 고려하여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비리의 종류는 뇌물, 횡령 그리고 배임, 승부조작 등의 형태로 비교적 단순하나 인권침해는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폭력, 성폭력 또 신체적·언어적·심리적 요인 등 너무나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수용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형배 위원 헌법……

○소위원장 임오경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개정안 신설 조문에는 ‘체육계 인권침해란’ 어찌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권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준용해서 이럴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문체부 의견 수용하는 바입니다.

○박수현 위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유형을 나열하

는 것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또 김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수정의견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배 위원 한 가지만요.

인권침해, 차별행위라고 하는 게 지금 헌법 10조부터 죽 규정돼 있는 것을, 아까 체육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10조부터 죽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에 나와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명시하면서……

○민형배 위원 아, 그러니까 헌법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금지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그겁니다.

○민형배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까 헌법이라고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 언급을 하면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인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그것을 준용해서 인권침해라는 건 이리이런 경우, 차별행위라는 건 이리이런 경우라는 규정이 있다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까 헌법에 있는 대로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헌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 있는 차별행위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준용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체육계 인권침해란’ 훈련, 지도, 경기 등 운동 과정 및 체육단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를 의미한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자구에 동의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5쪽에……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그러니까 ‘체육계 인권침해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밑의 신동욱 의원님이 낸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모든 것을 넣는 이 자구를 저희가 ‘인권이란’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해서 함께 한다고……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이걸로 하자는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 하셨어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취지는 같은 취지……

○민형배 위원 아니, 취지가 아니라 조문을, 조문을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뭐 지도 어찌고 그런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의 권한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7쪽입니다.

진종오 의원님과 신동욱 의원님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세 꼭지입니다.

먼저 1번, 맨 위 첫 번째는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할 경우에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거고, 협조요청 대상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 그리고 피요청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협조요청 대상은 위와 조금 다르게 나열적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 그리고 여기에도 피요청기관의 협조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뒤쪽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근거 마련, 여기는 협조요청 대상 기관이 포괄적 일반적인 자료요청인 관계 등으로 해서 기관장이 아니라 기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피요청기관의 협조의무, 그리고 추가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에게 통계 작성·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내용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맨 처음 1번 현장점검 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할 때의 협조요청 대상 기관이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두 번째와 동일하게 또 혁행법 18조의13에 징계정보시스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체계·자구적 측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수정 수용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안 자체가 수정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아까 말씀하신 관계기관을 명확히 하는 게 좀 수정된 거고요, 나머지 안은 의원님들이 내신 안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돋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진종오 의원님 발의한 것에 있어서는 현황은 문체부장관이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조요청 권한이 없어 현장점검이 어려움, 그래서 개정안으로 문체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박수현 위원 질문 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동의하는데, 문체부장관이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시 관계기관에게 협조요청 근거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점검을 할 때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진종오 위원 관계기관의 협조가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덮기도 하고.

○박수현 위원 협조가 왜 안 되지요, 장관이 가는데?

○진종오 위원 장관이 가는데 회장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박수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종오 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박수현 위원 예, 이해가 됐어요. 알겠는데, 하여튼 하도 이상해서 그래요. 당연히 가면 협조가 되고 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상식적인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진종오 위원 첨언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두 번째 체육계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돼서 진종오 의원님 안에는 제18조의2제5항인데 현황은 문체부장관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 수집이 어려움, 그래서 개정안으로 문체부장관은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동의합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이게 똑같은 내용이네요, 어쨌거나

관계자.

○김재원 위원 수용합니다.

○배현진 위원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세 번째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신동욱 안제18조의16인데 현황은 실태조사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문체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문체부, 정부 측은 전부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세 번째, 인권감시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전문위원 전완희 10쪽입니다.

진종오 의원님 안에 포함돼 있는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인권감시관의 업무는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목적이 이 법에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인권감시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호나 지원 대상자 등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체육계 인권보호라는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도록 법적 명칭 변경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박수현 위원 인권보호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그리고 포지티브한 그런 측면들이 강조되는 명칭이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윤리보호관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좀 어떨까 하는데, 인권보호관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스포츠 현장의 비인권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닌 스포츠윤리센터이므로 인권보호관이라는 용어도 윤리보호관 등의 표현으로 바꾸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임오경 진종오 위원님 어떠신가요?

○진종오 위원 일단은 윤리라는 말씀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윤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선수들의 거부감이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당신들을 보호한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부드럽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들을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임오경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스포츠윤리센터 취지는 현장의

윤리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는 저는 동의를 하고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비인권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 같아서 저는 윤리보호관의 표현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인권감시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인권감시관은 전국에 있는 학교 운동부에 가서,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하지만 인권감시관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상담이라든지 학교시설 점검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없어도 선행적으로 먼저 가서 점검하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윤리보호관은 그 의미상 굉장히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기관의 명칭은 윤리센터지만 선수들 인권에 관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반 업무를 이분이 감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것은? 인권보호관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진종오 위원** 어떻게 보시면 인권, 권리랑 윤리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윤리보다는……

○**배현진 위원**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진종오 위원** 예, 약간 단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서의 수용성이라는 측면 또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권감시관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윤리보호관으로 전부 다 바꿨을 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은 유지하고 보호를 바꾸는 그런 정도로 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이 일을 하는구나라고 현장에서 잘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우선 일단 1단계로 그 정도 수정을 하시고……

○**배현진 위원** 선수들이 이 사람이 뭐 하러 오는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진종오 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면 나는 당신의 윤리를 보호해 주려 왔다가 아니라 인권을 보호해 주려 왔다는 게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다 보니까 한번 이 부분은……

○**소위원장 임오경** 자구의 문제였는데 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상징성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상징성을 만들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한번 했던 겁니다.

○**배현진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 제안을 거부가 아니라 더 한번, 일단은 이렇게 해 보고 또 추후에 우리 계속 또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소위원장 임오경** 예, 인권보호관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신고자 비밀보장 예외조항 마련, 김선교·진종오 의원님 안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10제3항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전완희** 아까 설명을 드렸고 초반에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주 내에서 정도로 제한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자료……

○**소위원장 임오경**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전문위원 전완희** 그 부분은 개정하는 대신에 18조의9 5항을 신설해서 징계요구를 할 때 징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최소한으로 제공하는 정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신고자가 제삼자인 경우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개정안으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이나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한 항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까 민형배 위원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신고자가 윤리센터에 민원을 하는 경우는 진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그러나 혹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인한 어떤 신고를 했을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마쳤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신고자가 동의하였다고 해서 특히 기관도 아닌 언론 등에 무차별로 배포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론 배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체부의 기관 자료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기간이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같은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아무렇게나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양측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이 법을,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 동의하되 그 앞뒤 내용을 조금 공개할 수 있는, 언론을 배제한다든가…… 언론에는 누구든지 가서 이야기하면, 박수현 전 홍보수석님 잘 아시지만 보도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내용이 없어도. 또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든 아니면 어떤 내용에 관해서 어떤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조항을 점 구체적으로 하시든 안전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자가 늘 참일 수는 없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이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의4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자임을 알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신고 내용에는 어떤 범죄사실이나 이걸 포함할 수는 없고요. 그 신고한 자가 본인임을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한정하는 조항을 넣을 거고요.

18조의9 5항에 신설되는 부분은 윤리센터가 범죄행위를 고발할 때 어떤 내용을 넘길

거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해서 두 가지 내용만 넘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소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여기서는 언론에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징계 혐의를 고발할 때는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언론에 공개 가능한 범위는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자임을 공개할 때 하는 조항입니다.

○**배현진 위원** 그 부분에 한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김재원 위원** 앞서 김선교 의원이 발의하신 같은 내용의 조에서 검토의견이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해 주시는 걸로, 진종오 의원안에는 지금 그건 없는……

○**전문위원 전완희** 예, 이 법이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김재원 위원** 예.

○**소위원장 임오경**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보류를 할까요? 이것 수정해서 반영……

○**배현진 위원** 아니, 정부에서 저희 의견을 다 반영하셨어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다음은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황희 의원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0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전완희** 19쪽입니다.

황희 의원님 안에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 주요 업무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 신고 접수·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인데 현재 윤리센터 명칭은 고유 업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 전담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 또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제대로, 좀 부족하다는 측면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포츠윤리센터가 4년간 윤리센터라는 고유 명칭의 고유성이 확보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필요성과 또 개정안처럼 조사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센터의 기능이 조사에만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먼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 조사원의 경우에는 조사 업무에 한정돼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스포츠윤리원으로 대안 검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국가스포츠윤리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윤리센터에서 만약에 바꿔야 한다라고……

○**박수현 위원**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배현진 위원 명칭 변경이 기관 건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비용이 다 들잖아요. 혹시 추계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배현진 위원 그러면 그냥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상임위에서 웬만하면, 특히 전 장관님께서 하신 법안인데 당연히 처리하고 싶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터라는 명칭이 어떤 기관의 위상과 인지도를 반영하기 어려워서 바꿔야 한다라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박수현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제가, 체육국장이 대신 말씀.....

저희가 윤리센터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바뀐 명칭을 홍보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가 들 것 같고요. 홍보 비용을 빼면 한 800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글쎄요. 2009년에, 제가 이걸 과거에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명칭 변경을 하면서 총 23억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전 부의장께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저희 정부는 아니지만 공공 기관들이 굳이 불필요하게 명칭 변경을 하면서 140억 원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23억 원 정도, 기관의 규모가 콘텐츠진흥원이 훨씬 크니까 지금 대략 추계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만 문체부에서 지원받아야 될 많은 분들 돈 없어 가지고 저희 정치권에까지 와서 도와 달라고 그렇게 예술인들 읍소하게 하시면서 이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 장관님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추계 정도는 가져오셨어야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잠깐 보류하고 정부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정부도 지금 신중 검토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신중 검토인데 '만약에 바꿔야 한다라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종오 위원 꼭 바꿔야 한다면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딱 이걸 봤을 때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굳이 꼭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배현진 위원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저도 문체위는 첫 경험이어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좀 묘했어요. '뭐 하는 데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의견으로 이미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여기 개정안처럼 조사원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는 또 임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센터라는 임무는 적절하게 기능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갸웃거리는 그런 명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좀 계류시켜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존경하는 배현진, 진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도 좀 해 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예산 추계도 다 해 봐서 종합적

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지요.

○**배현진 위원** 이게 전임 장관님께서 기관이 잘 운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답 하시니까 이런 법안을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구체적인 역할을 띠게끔 하려고 애정을 담아 법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법안 만드신 황희 의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 내용도, 추계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세히 좀 보고하시고 더 디테일하게 논의하여 가지고 저희한테 좀 더 완성도 있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또한 국가스포츠윤리원이라는 이 네이밍도 별로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

○**진종오 위원** 국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약간 좀 사회주의 느낌.....

○**배현진 위원** 이상해요, 국가를 굳이.....

○**김재원 위원** 저도, 그것도 그렇고 좀 뭔가.....

○**소위원장 임오경** 초기에는 센터라는 명칭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처음에는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4년간 사건 조사 및 실태조사, 교육 등으로 기능이 좀 확장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명칭을 바꿀 경우 조사 기능에만 한정이 되는 것 같아서 명칭 변경은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보류하는 것보다 잘 협의하여 가지고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한번 내놓으시고 그런 걸 전제로 한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황희 전 장관님께, 속상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염려를 가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황희 의원안 제18조의5제7항·제8항입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황희 의원안에서는 윤리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또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라고 함은 신고자, 피해자 및 피신고자까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내부 규정에서는 센터가 사건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있을 뿐 조사결과 등에 대해서 관련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임의적인 조사 진행 및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고 조사 내용 및 결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좀 더 절차적인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의제기 이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그것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90일로, 명확하게 9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해 주고 이런 수정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피신고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 지연이 우려되므로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용하여서 신고인과 피해자에

한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의신청 절차에 선행하는 통지의무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현황은 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당사자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절차, 내용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신고자를 제외한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수현 위원** 우선 첫째는 지금까지 센터 조사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서 신설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신설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생각과 제가 약간 다른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당사자의 범위에 피신고자를 제외한 신고자와 피해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견, 그런데 이것은 아마 굉장히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일이 굉장히 길어질까 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김재원 위원** 입법례, 형사소송법 245조의6에 나와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예. 그런데 형사소송법 이걸 준용한다 그러는데 형사소송법은 유무죄를 따지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준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어쨌든 피신고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센터의 한 번의 결정으로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취지 또 의견은 다 알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우선 어떤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걸 조사해서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이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해서 가해자가 징계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징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단체로 징계 요구가 됩니다.

○**박수현 위원** 해당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뤄 가면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라든가 피혐의자에 대한 건 별도 절차가 필요 없고요.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기각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들여온 겁니다.

○**박수현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모든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폭주가, 우리 윤리센터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는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합리성과 경중 등을 따지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저는 별도로 구성하여, 기각과 조치를 판단해야 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저희가 이의신청을, 절차가 없어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밑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기각과 조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신고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심의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피신고인의 경우는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상별위원회 등에서 이미 소명과 재심의 기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사례와 같이 이것은 신고인과 피해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고인과 피해자로만 제한해도 그렇게 이의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최소 한 10명 정도와 또 이의신청을 받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과 예산 확보가 사실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10명으로 해서 동수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게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그러면 11명으로……

○**김재원 위원** 홀수로 가셔야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홀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안을 해 주신다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정부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스포츠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신고가 난무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소위원장 임오경** 지방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아닌 보호자가 직접 나서서 지금 이 네 군데 기관에 다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센터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기관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난무하는 신고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도, 현장에서는 지금 신고 대상들을 봤을 때 많더라고요. 스포츠윤리센터하고도 제가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는데 이게 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난무하는 것에 대한 징계도 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김재원 위원** 예를 들자면 허위신고.

○**소위원장 임오경** 예, 허위신고와 관련된 징계 절차가 좀 있어야지만 난무하지 않는다는. 지금 현재로는 스포츠윤리센터는 너무 신고가 과부하된 상태인데 조사를 하다 보면

허위사실도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정계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먼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이 문구 속에서 그 부분을 녹여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추가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무고, 아까 거짓·허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무고죄라는 형벌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계는 그 단체 내에서, 어디 소속이 있을 때 정계를 하는 범위여서요 외부인이 허위로 했을 때는 형법으로 다뤄야 되지 이 정계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법을 검토할 때 내부 소속원이 했을 때 혹시 정계까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정계를 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에서 다루겠지만 선수들에게, 만약에 허위사실로 무고죄가 되었을 때는 자격정지, 출전정지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계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학생 선수들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법과 다르게 스포츠윤리센터나 대한체육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것 또한 수정이 좀 필요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말씀하신 무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솔직히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한 예방책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기각 결정 시 신고인의 무고 혐의도 판단하는 걸로 윤리센터 규정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것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신고인 대상 상환청구권, 신동욱 안 제18조의7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전완희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의원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또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사용되는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그 취지는 당연히 타당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은 18조의7입니다. 그런데 현행 18조의3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이미 치료, 상담, 법률 지원, 일시보호, 보호시설 운영, 기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으로 인한 개정 실익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현재로서 스포츠윤리센터

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추가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신고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비용 상환청구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현행에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으로 신고자, 피해자에 대해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명시,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앞에 말씀하신 피해자 보호조치에 사용된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체부 지적, 검토보고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그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한 부분이 이미 센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신중 검토를 요한다고 하신 부분이오. 그렇게 중복이 좀 된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는 것이 신중 검토나 재고할 의제가 되는가, 좀 중복이 돼도 더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봐서 이 부분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른 법률 개정안 등을 보면 기왕에 다 많이 있는 것들 잠깐 잠깐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서 다시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는 선명하게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강조의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종오 위원** 저도 박수현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요.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현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실수요는 1억 3000이고요, 1인당 500만 원.

○**진종오 위원** 저 또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과 정부 측에서 어쨌든 이게 지금 피신고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래서 그 상환청구권은 여기서 받지 않고, 삭제하고 앞 부분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복으로 규정하는 걸 동의한 겁니다.

○**배현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자구 수정을 통해서 이건 통과시키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관련 권한, 체육단체 대상 조치요구 유형화, 징계요구·권고·시정명령, 진종오 의원님 안 제18의9제2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꼭지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간지로 끼워 드린 소위 자료 4-4에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4를 보면서, 아마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인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 4-4인데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꼭지가 지금 6개인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꼭지가 6개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하나씩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6개를 다 들겠습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이게 다 좀 관련도 돼 있고……

○**소위원장 임오경** 전문위원님,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빠를까요?

○**전문위원 전완희**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완희** 그러면 먼저 1번 30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권을 유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징계요구만 할 수 있도록 18조의9에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권고와 시정명령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개선, 권고 등도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체육단체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배현진 위원** 수석님, 정부 입장은 다 빼고 속도감 있게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꼭지 3개만 해 주십시오, 일단.

○**전문위원 전완희** 꼭지 3개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전문위원 전완희** 다음 두 번째 꼭지 오른쪽에 보면 문체부장관은 징계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결과보고 시에 추후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징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징계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장관이 그걸 소명받기 위해서 체육단체에 근거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 등 조치결과를 받은 후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더하여 체육단체에 징계결과를 요구받을 때 근거 자료를 포함하여 요구받는 방안, 그리고 문체부장관이 보고받은 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도 보완요구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3개 했으니까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2개 했습니다. 32페이지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징계조치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윤리센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만 재심의를 요청했을 때 명확한 절차적 기한 90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윤리센터 조사결과 현실적으로 징계요구 외에도 제도개선, 권고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 그래서 개정안으로 문체부장관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의 인권침해 관련 권고, 시정명령 가능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두 번째로 조치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요구에 있어서는 현황에는 징계요구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징계요구 사유와 징계결과가 다른 경우 실무적으로 근거 자료 제출 및 설명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그 징계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의요구안입니다. 현황에는 징계요구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의 재심의요구권, 황희 장관 법 아니고요. 윤리센터의 재심의요구 요청 권한까지 넣은 것은 신동욱 의원님의 신설 요청 법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장관의 재심의요구, 징계 등 요구권 이렇게 해 놨는데 윤리센터에서 요청 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굳이 장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징계요구를 할 때 센터에서 장관에게 요구를 하고 장관이 단체에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반대가 아니고요……

○**배현진 위원** 질문인데요. 아까 박수현 위원님 하셨던 질문이랑 비슷한데, 장관이 기관에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기관이 마음대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징계를 요구할 때 어떤 특정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징계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적정 수준의 징계가 안 나왔을 때 그걸 다시 재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뒷부분에 다를 텐데 진종오 의원님은 그 징계의 종류를 아예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게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제18조의9제3항, 개정안의 조항이 1개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수정안이 지금 3개 조항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권이라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데 개정안은 1개를 냈는데 정부가 수정안을 3개를 지금 낸 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니, 제가 뭐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언뜻 드는 느낌은 그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3개씩이나 막 낸다면 이게 국회가 할 일인데 정부가 수정안을 막 3개씩이나 내서 하는 것이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정안을 3개씩이나 낸다면 차라리 이 수정안을 끓어서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의 조치요구권은 진종오 의원님께서 내신 조치요구권의……

○**소위원장 임오경** 그거는 아직…… 뒤로 넘어가는 거지요? 아직 4번 꼭지 하지 않았습니다. 1·2·3번.

○**박수현 위원** 그거 아니고 지금 김선교 의원님 안에 대해서 개정안은 하나인데 수정안이 3개나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입법권을 너무 침해하는 조치 아닙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낸 부분들은 이 조치결과의 근거 자료 제출요구권이라는 게 실은 징계에 대해서 적당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강제하는 부분이어서요. 이 강제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으려면 이런 보완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견을 낸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우선 김선교 의원께서는 근거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90일 내에 내야 되는 건지 1년 이내에 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90일 이내 조항을 보완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황희 의원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심의, ‘해당 체육단체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 그 조항에 붙은 겁니다. 김선교 의원님, 황희 의원님, 진종오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법이 각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화입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체육단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각종 처리결과를 문체부에 보고 시 지금 결과만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를 별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동욱 의원안 제18조의9에 따르면 체육단체의 징계조치, 스포츠공정위 징계조치가 가볍

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소위에서 김선교 의원안을 심사할 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징계 수위가 문체부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재징계요구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므로 재징계요구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추후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 안에 소위에서 징계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윤리센터·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프로종목단체 등 관계 단체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제안했으면 한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바도 없고 저희 의원들에게 이 결과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인계받은 지……

○소위원장 임오경 지난 소위에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으니 차후 논의를 하자, 하지만 보완장치를 통해서 현장에 직접, 윤리센터·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프로종목들 등 관계자 단체 의견들을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후 다시 논의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된 것을 의원실에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이 법안이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전문위원님, 4번 꼭지 들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한 경우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윤리센터가 장관에게 징계요구를 요청하면 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간접 요구 형태인데 그건 그대로 두고 여기에 추가해서 윤리센터가 장관과 사전협의한다는 걸 전제로 체육단체에 직접 징계 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유형을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하는데 징계 대상별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원, 운동경기부 등으로 구분하고 징계 대상에 따라 징계 내용을 제명·파면·해임·강등·정직·자격정지·출전정지·감봉·견책 등으로 달리 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그런 근거규정이 법에 없어서 문체부나 윤리센터에서 단일하게 징계요구를 하는데 이에 따라 체육단체는 낮은 수준으로 징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징계양형은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즉 대한체육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하단의 제명·파면·해임·강등·정직·자격정지·출전정지·감봉·견책 등 징계유형은 법에서 직접 명시하되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운동경기부, 각 징계 대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중징계는 뭐를 하고 경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6번까지 말해 주실래요?

○전문위원 전완희 죄송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체부장관이 조치요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또는 평가 관련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불이익조치를 함으로써 조치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가 저희 문체부 소관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 등 불이익조치도 명백히 상한 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재정 지원의 배제조치는 3년의 상한을 설정하고, 그리고 개정안의 문구가 조치요구 미보고로 돼 있는데 너무 실효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치요구 미이행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윤리센터의 직접 조치요구 관련돼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윤리센터의 직접 조치요구 권한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입니다.

그다음, 징계요구 종류 세분화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윤리센터는 단순 징계요구 중으로 징계요구 시에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 문언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 법 사례를 고려하여서 징계 대상 및 비위 경중에 따른 징계 종류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치요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체육단체의 보조금 평가 관련 불이익은 수정 수용입니다. 현재 20년에서 24년 9월까지 징계요구한 368건 중 133건, 36%가 미처리 상태이며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규정이 부재합니다. 개정안의 문언은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술인 권리 보장법 사례를 참고하여 조문 수정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윤리센터의 직접 조치요구안을 보게 되면 현황에는 지금 징계요구 요청이 윤리센터에서 문체부, 징계요구는 문체부에서 체육단체로 하는 절차로 절차 지연 및 행정 부담 발생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직접 징계요구,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수용했고요.

또 다섯 번째 꼬지로는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 종류 세분화, 진종오 의원님 안인데 현행에는 '체육회 규정상 중·경징계 구분이 없어서 윤리센터는 단순 징계요구 중으로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또는 자의적 징계 사례가 존재하는데 정부 쪽 입장은 수정 수용으로 재심의요구 타 법 사례를 고려하여서 징계 대상 비위 경중에 따른 징계 종류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필요함'으로 개정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조치요구 미이행 시 보조금 평가 관련 불이익 부과, 진종오 의원님

안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서는 현황은 체육단체는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20년에서 24년 9월까지 징계요구한 368건 중 133건, 36%로 미처리된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지금 현재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문체부장관이 해당 단체에 대하여 각종 평가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주관 기관 등의 장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냥하게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것 지금 정부가 설명해야 될 것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임오경** 너무 광범위하게 해 주셔서 이해가 지금 안 가요.

○**배현진 위원** 지금 계속 저희가 두 번 세 번 중언부언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이나 정부가 콤팩트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힘드시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진종오 위원** 제가 낸 내용이다 보니까 의견은 없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조금 지급 중단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예산 받아 가 놓고서는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보조금은 날아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싶어서 이런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배현진 위원** 하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징계유형 구분에, 타 기관의 법에 근거해서 타당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 직접요구의 제한적 허용에, 만약에 위의 법을 저희가 같이 처리를 하고 나면…… 기존에 대다수 이루어지는 간접요구, 장관을 거쳐서 그러니까 문체부를 거쳐서 체육단체에 징계요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유형 구분을 제명 등에서 정직까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스포츠윤리센터입니까, 아니면 문체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조항에 보면……

○**배현진 위원** 문체부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여기 지금 ‘문체부와 협의하여’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배현진 위원** 그러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권한을 가지고 그걸 완료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실제 징계 종류를 정하는 부분은 각 단체의 공정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요구하는 그 권한을 그대로 지금 저희가……

○**배현진 위원** 아니, 현행이 그런데 지금 법 6개가 쭉, 일련의 그 과정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장관을 거쳐서 징계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완벽하게 더 적절한, 문체부가 의도한 징계 수준에 맞도록 하려고 지금 취지로 가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이게 지금 저희를 거쳐 가니까, 어차피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면 센터에서 그 세분화된 징계요구를 하기 때문에 센터의 권한을 존중해서 센터가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배현진 위원** 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자체가 문체부에 아예 징계를 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박 이사장님, 지금 이 말 맞아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과거 센터에서는 중징계 요구 및 경징계를 나눠서 해왔고 이제 다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문체부 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거잖아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그런데 저희는 그런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47.5% 이상이 징계 미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민형배 위원** 징계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하고 징계의 종류를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서 발의해 주신 조치결과에 대한 회의록 제출이나 체육단체 조치……

○**민형배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징계만 얘기해 보세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한이 있다면, 그 법안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징계 세분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아마 징계요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형배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전에는 중징계·경징계만 구분을 했는데 만약 센터에서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이것은 징계를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저는 만약에 그 전에 말씀하신 법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이 발의된 법안은 구체화해서 문체부장관이 단체에다가 제시를 하도록 했는데……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이 법안에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면 센터는요? 센터에서 그걸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이것 센터에서 문체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센터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관해서, 징계 수준에 관해서 구체화해서 문체부에 요청하면 문체부가 그 안을 그대로 종목단체에게 경기단체에게 협회에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전처럼 그냥 올라왔는데 문체부가 다시 구체화해서 보내려고 하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아니, 그렇게 되지는……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 상황을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일관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장관이 그대로 체육단체, 그러니까 종목단체나 협회에 통보한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정리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은 종목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징계하세요만 했는데 이제는 센터에서 준비한 걸 문체부장관 거쳐서 문체부장관이 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징계해야 된다고 준 거고요.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단체가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재심의를 요구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징계를 했어. 그런데 그 징계가 적절치 않아. 그러면 장관이 지금 어차피 다시 요구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세분화해서 보내 줘도 종목단체는 그대로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경고만 하세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제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것은 재심할 때 얘기고, 재차 다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얘기고. 그래서 그걸 잘 검토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종류를 이렇게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요. 대통령령에는 경징계·중징계 정도로 구분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거꾸로지요, 거꾸로. 법률에는 경징계·중징계 정도로만 정리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거기서 구체화한 것을 종목단체, 경기단체에 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 말은 그렇게 했을 때 종목단체에서, 경기단체에서 ‘아니, 왜 징계 권한을 문체부가 행사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징계하라고만 하면 저희가 그 수위는 결정할 텐데 왜 우리한테, 징계 권한까지도 문체부가 갖겠다는 거예요?’ 이런 반발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중징계·경징계에 대해서만 구분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세부적인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법에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을 하고, 이것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에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 부분은 저희가……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종목단체나 경기단체나 협회가 징계 수위를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체육부장관이 그것까지 정리해서 주세요…… 웃기잖아요,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 거고.

○진종오 위원 이게 지금 나오게 된 내용이……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제가 이것 국감 때도 다 지적했고 징계를 너무 이행을 안 해서 사실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종목단체에 맡겨 놨을 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지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수위를 결정해서 이행을 하게 만들도록 약간 강압적으로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민형배 위원 수위를 결정해서 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정부 쪽에서 볼 때, 수위를 결정해 주면 종목단체들이 반발할 거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것은……

○민형배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경고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제명하라고 그러세요?’, 이를테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종오 위원 그것은 민 위원님이 세게 나오신 거고 대부분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종목단체에서는 더 낮은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얼마 전에 축구협회에서 징계자 대폭 사면했잖아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단체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려면 윤리센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리센터라는 데가, 제3자 기관이 있어서 징계를 정하게 되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윤리센터로 가는 수가 있지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신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서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센터에서 경징계·중징계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양정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민형배 위원 저희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그걸 보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사유에 해

당해서, 그 범주 내에서 신청을……

○민형배 위원 아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네요.

다시요, 문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경우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 부분은 충분히 우려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징계를 법에다 정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보통 솜방망이 징계가 더 많이 나온 그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게 충분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협회나 체육회, 단체의 자율성하고 충돌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걸 어떻게 풀 거냐고 내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이제까지 자율성을 보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져서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자율성을 보장했는데…… 자율성을 보장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지.

○진종오 위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쪽 얘기 나오는 게 각 종목단체에 맞는 형에 대해서…… 징벌의 단계, 수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 수위에 맞게 내보내는데 그 수위가 너무 심하게 나간다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배현진 위원 그런데 신고하는 경우는 대단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징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심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단체들의 어떤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정말 엄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배현진 위원 문체부도 그것을 엄정하게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문체부장관이 징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심의요구도 함과 동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종목 단체별로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지금 다 장치를 마련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배현진 위원 같은 의문점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생각해서 저희가 법안을 손을 봐서 중징계·경징계만 단체에다가 하고요.

○민형배 위원 저는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리고 세부적인……

○민형배 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거 솜방망이야 그러면 다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서 정해 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거는 문체부가 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 게 윤리센터와 문체부를 거쳐서 구체적인 징계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또 스포츠 체육인이 윤리센터라는 기관에 신고를 할 정도면 그 내부에서는, 허위 신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자이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목단체 안에 그냥 판단을 맡겼을 경우에 다수 중에서 단 한 명이 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처분한 걸 다시 재심의를…… 그럼 그 많은 안을 어떻게 문체부가 늘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재심의, 그러니까 종목단체가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제가 앞에 쭉 읽어 봤는데 금감원 등등 다른 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징계안을 권고하고 하는 절차가 있던데요, 그 정도는 저는 입법취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에……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다른 법률과, 어디 보면 틀림없이 ‘자율성을 보장한다’ 어찌고 된 테 보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있어요. 있지 않아요? 단체에, 협회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자율성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보장하게 돼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거기 내부의 자기 자신들의 규정하고도 또 안 맞는 대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체계하고도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손보면서 가야 돼요, 같려면.

○**진종오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민형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개선을 한다면 종목단체에 딱 정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 정도의 징계를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정도로 권고한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징계가 어바웃 뭐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요.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급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명시를 안 해 주면 아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민형배 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징계·중징계 정도를 정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그 단체의 징계위, 스포츠공정위 이런 테서 결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민형배 위원** 그것이 온당하지 못하면 그걸 제재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배현진 위원**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감 때도 민주당 위원님 어느 분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중징계 사안인데, 성비위 문제나 이런 것은 중징계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경징계해 가지고 국감 때 누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제가 했다니까요.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중징계·경징계는 문체부가 그 구분선은 확실하게 지금 두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지금 경징계·중징계 종류는 정리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음 조항에 조치요구 미이행 시 배제조항을 다시 포함을 시키는데……

○**배현진 위원** 예,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스포츠비리에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성폭력, 뇌물, 횡령, 배임, 승부조작 이렇게 저희가 스포츠비리를 큰 틀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징계 관련돼서 말이 나왔는데 징계 수위가 계속해서 반대로 높아진다라고 하면 선수 출신들, 지도자나 어릴 적부터 한 우물만 파고 한 길만 걸어 왔는데 제명되는 사례들도 좀 많더라고요, 종목단체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아예 스포츠계에는 복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비리에 관련돼서 뇌물이나 승부조작이나 성폭력 이러한 범죄 관련돼서는 충분히 제명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적인, 최근에 저희가 징계를 주는 것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폭언 같은 것을 가지고도 제명을 시키고, 징계 수위가 너무 높아서 결과적으로 또 너무나 억울한 사안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스포츠에 유독, 직능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스포츠에만 유독 징계가 과한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그 수위에 맞춰서 꼭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는 학생들 간에도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 2년 자격정지를 때립니다. 그럼 그 선수는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진종오 위원** 폭력을 했으면 그만둬야지요, 안 하는 게 맞지.

○**소위원장 임오경** 이렇게 들었는데 아예……

○**배현진 위원** 나쁜 짓 하면 당연히 달게 벌 받아야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벌을 주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징계 관련돼서는 신중함도 그 안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윤리센터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진종오 위원** 윤리센터가 잘하겠지요, 이제.

○**민형배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정리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맞지요? 그렇게 가는 거지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징계유형을 중징계와 경징계만 법에서 명시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배현진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진종오 위원** 예, 그렇게 받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미이행의 경우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민형배 위원** 그거 이제 다시 제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차관님, 여기서 한 가지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축구협회 무더기 사면

사태,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그때 철회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완전히 다 철회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다 징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복권했다가 복권이 철회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영구제명 상태입니다.

○민형배 위원 모두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민형배 위원 원래 징계대로 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이 논란은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마지막에 조치요구 미이행 시 보조금, 평가 관련 불이익 부과에 관련돼서는 이의 없습니까?

○김재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조금 불이익처분 이것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입법례를 준용해서 만들었다고 검토 의견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인 권리침해에 관한 것이고, 권리침해를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체육진흥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계자에 대한 낮은 징계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이렇게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사권을 일단 침해를 하는 데다가 그 장이 뭔가 잘못을 해서 보조금 불이익을 주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 종목단체의 선수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혹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과도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목 조르기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게 예산을 가지고 목 조르는 게 아니라 이행하지 않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그 단체는 예산을 받아 쓰는 거잖아요. 보조금의 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1년간의 예산을 해야 되니까……

○진종오 위원 받아 쓰는데 그리고 안 쓰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돼서 이런 얘기가……

○김재원 위원 그런데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진종오 위원 예, 유사……

○김재원 위원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낮은 수위의 징계를 했었을 때 조치사항을 이렇게 하겠다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보조금의 형태로 나타내신 것이고, 예술인의 권리침해 부분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얘기가 굉장히 다른 거지요.

그리고 이 보조금 지급을 안 했었을 때 보통 그 단체의 장, 예를 들자면 축구협회의

장, 이기홍 회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계를 하고 싶은 것인데 나머지 선수들이나 생활체육인들한테도 전부 다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3년간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좀 말씀드리면 재정 중단 등은, 체육단체에서 징계요구를 하는 거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체육인의 인권침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의 인권침해랑 비슷한 시점에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시정 대상, 제재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예술지원기관, 필요한 사람 등, 사업자 등 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이 개인인데 체육은 왜 단체냐가 되는데 예술도 똑같이 예술사업자, 예술기관 등 똑같기 때문에 체육단체들도 똑같아서……

○김재원 위원 여기 제18조의9 5항에 써져 있는 걸 보시면 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거나 등등등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면 제2항을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조치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의미라는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김재원 위원 시정명령이 인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운영을 잘못 했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34 조제5항에도……

○김재원 위원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빗대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2항을 한번 읽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제2항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 보세요. 징계요구와 조치요구에 대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거는……

○김재원 위원 혹은 자료제출이나 아니면 단체의 장이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인권침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끌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김재원 위원 제2항을 다시 읽어 봐 주시라고요. 그 말씀 몇 번 드립니까, 지금? 제2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제2항에 위반하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좀 과하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종목단체 자체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말씀 다시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건 시행령에다 위임을 할 생각인데요.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준들을 설정해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배제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김재원 위원 자, 제2항 일단 먼저 읽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18조의9 제2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 있는 자를 징계요구할 수 있다’

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재원 위원** 거기 체육단체의 장이라고 나와 있지요? 체육단체의 장 때문에 모든 종목단체라든지 체육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야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거는……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법안을 논의하면서 징계를 좀 강화하자라는 것은 충분히 다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위 규정을 어기거나 또 징계 절차, 징계를 내릴 때 좀 가벼운 징계조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종목단체에 완전체를 이룬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보조금 또한 운영비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장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장 때문에 왜 종목단체가 이런 보조금 같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저도……

○**민형배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한테 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이게 보면 통상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할 때 문체부장관이라는 표현이 문체부를 의미하지……

○**민형배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거 좀 알려 주시고. 18조의9 지금 살펴보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18조의9 제2항 말씀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 2항에 보면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 연장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고’……

그런데 어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예술인 지위에 관한 것은 유사 입법례여서 이걸 가져온 건데, 단체장이 문제가 있으면 단체 보조금이나 단체에 제재를 한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읽어 보라고 해서 2항을 읽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왜 그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건 그냥 예로 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입법례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잘못하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그 내용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김재원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지금 개정안 제2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없는데 왜 자꾸 그것을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원 위원 현행에도 그렇지. 예술인 권리 보장법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면 지금 인권침해 얘기도 없는 거네요. 18조의9 2항 현행……

○민형배 위원 지금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재원 위원님께서는 단체장에 문제가 있을 때 왜 그 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희가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하는 것처럼 하시니까 계속 더 헛갈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시 설명해 보세요.

○민형배 위원 문체부 지금 좀 이상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죄송합니다.

○민형배 위원 국장님의 좀 이상한 거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18조의9에 있는 부분의 2항·3항은 새로 신설되는 18조의9 2항·3항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민형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2항은 인권침해나 보고·검사에 따른 위법 사실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배제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우려 충분히 맞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선수가 피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13항에 보시면 배제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형배 위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다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김재원 위원 저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반대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이 가해지지 않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얼른 확인을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러면 지원 배제를 아예 빼 달라는 말씀이시면……

○김재원 위원 지원 배제에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형배 위원 이거 지금 체육단체에 관한 건데요?

○김재원 위원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지요. 체육인들은 그러면 권리가……

○민형배 위원 체육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단체가 징계를 받았어요.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장만 받으면 되지.

○민형배 위원 아니지요.

○김재원 위원 체육단체의 장이 잘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거기……

○민형배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체육단체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 생겼어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건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문제부장관한테 요청했어요. 문제부장관이 경징계를 해라, 중징계를 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그걸 이행하지 않았어요.

○진종오 위원 그럴 때는 보조금을 끊겠다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때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하는 조항인데 그게 안 된다고요?

○김재원 위원 예.

○민형배 위원 왜요?

○김재원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역시 단체의 장이나 그 안에서 일반적인 선수들이나……

○진종오 위원 다시 설명드리면 윤리센터에서 ‘이것은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시켰는데 그 단체가 안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단체의 전체의 문제 아니에요, 연맹도 그렇고? 장만 문제가 아니라……

○김재원 위원 전체 이사회나 이런 데서 징계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선수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거기 관여를 합니까?

○진종오 위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연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맹에서, 문제부라든지 윤리센터가……

○김재원 위원 그게 확실해진다고 한다면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김재원 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깎아서…… 그 내부에서, 말하자면 이기홍 회장의 이사회에서 전부 다 입 맞춰서 우리 여기에 불복하자 그래 갖고 징계를 안 내릴 수 있잖아요.

○진종오 위원 안 내리면 그건 문제인 거지.

○김재원 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이나 생활체육인들한테까지도 그게 다 부과가 돼야 되냐는 거지요.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사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김재원 위원님은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진종오 위원 맞아요. 맞는 말씀이고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연맹이나 협회가 그걸 안 했다는 건 그 단체 자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썩은 데를 그냥 놔둬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지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전체 선수라든지 생활체육인들한테까지도 그게 전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미이행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금 미지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진종오 의원님 안에 보면 제18조의9 제3항·4항·5항이 계속 이어지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윤리센터의 직접 조치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4항을 보게 되면 징계요구 종류를 앞서 세분화를 했고 마지막에 이걸 이행하지 않을 시 따라서 보조금이나 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무조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게 이어지고 연계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정부에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저도 들었을 때 오해를 했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니까 이게 4항·5항·6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조치요구 그리고 징계 종류의 세분화 그리고 마지막에 미이행 시 보조금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재원 위원님이 지금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에 있어서 오해를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 같아요.

○김재원 위원 배제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은 굉장히, 이건 공무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배현진 위원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씀이지요? 불이익이 가해지기까지 단체에 이의제기 절차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정부가 여기다가 정부 입장을 표명할 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예술인 권리 보장법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 수정 필요하다고 해서 김재원 위원님이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그걸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인권침해나 그런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제라는 단어는 너무 우려가 있으시니 일부 제한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완화시키고 이 기준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김재원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재원 위원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설명에 의해서 저희가 꼭지 세 번째 것,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의요구 이 부분만 계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형배 위원 그건 왜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일부 제한으로 하기로 말씀을……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중단하거나 일부 제한으로 하겠습니다. 배제 자체를 삭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 심의를 할 때 분명히 현장과 직접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의원실에도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무시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제안을 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의요구 관련돼서 지금 현재 보니까 문체부장관의 재심의요구권이건 항의 장관님이 했고 또 윤리센터의 재심의요구 요청 권한은 신동욱 의원님이 신설 요청을 발의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체육단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각종 처리결과를 문체부에 보고 시 결과만 보고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를 별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안에 따르면 체육단체의 징계조치, 스포츠공정위 징계조치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소위에서 김선교 의원안을 심사할 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징계 수위가 문체부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재징계요구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므로 재징계요구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 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소위에서 징계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게 윤리센터 그리고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프로종목단체 등 관계 단체 의견들을 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전혀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저희가 지금 속기록에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말씀하셔 가지고 속기록을 찾아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이건 제가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현장에 있는 종목 관계단체들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이것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저는 통과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지난 소위에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지금 근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등은 실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단체들의 징계 이런 부분들

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같은, 재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걸 신설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다 같이 가는 것이……

○**소위원장 임오경**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아까 저희가 재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통과시킨다면 이게 같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민형배 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진종오 위원**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정부 측에서 맞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있는데 정부 측에서 맞다는 건…… 맞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까지 재심의요구, 이의신청이 이 법안 안에는 없었어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민형배 위원** 센터장님, 재심의요청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넣자는 거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넣으면 되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조정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건 제가 입법을 할게요. 됐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황희 의원님이 발의한 18조의5 제7항·제8항에 관련돼서 우리가 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 관계로 이걸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지금 하나가 더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에다 같이 접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 아까 앞에서 윤리센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기로 저희가 얘기 다 하고 넘어온 건데 없다고…… 오늘 법안을 쭉 다 처리하면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아까 하고 넘어왔는데……

○전문위원 전완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배현진 위원 당장은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법안 처리하면 생기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전완희 아까 재심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논의하다가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63페이지의 수정안 조문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오른쪽 보면 ‘보고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심의할 것’인데 필요한 경우라는 게 다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해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진종오 의원님 법안하고 황희 의원님 법안이 유사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같이 병합해서 정리해 오셨으면 간단했는데 지금 이걸 분리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이 두 가지 법안을 여기다 다 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병합해서 하나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진종오 의원님 안이 62쪽에 있고 황희 의원님 안이 63쪽에 있는데 63쪽 맨 오른쪽 수정안에 지금 그걸 다 담았어요. 90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징계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를 수정안에 다 담았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전완희 예, 수정안 64페이지……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62쪽의 진종오 의원님 안하고 63쪽의 황희 의원님 안을 모아서 지금 3항으로 해 가지고 다 담은 거지요?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들어가 있네요.

○전문위원 전완희 예, 수정안 63쪽 3항부터 65쪽 5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에 정한 대로 하자,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재심의를 요구할 때 한정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서 정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민형배 위원 그럴 수 있나요?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목단체들과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 추가적으로 지금 황희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님이 낸 조치결과에 대한 재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18조……

○민형배 위원 그게 지금 포함돼 있지 않나요?

○소위원장 임오경 포함이 안 돼 있고 별도 법안으로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 놨어요.

○민형배 위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안에 있는데?

○**배현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종목단체들이 미이행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실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염려를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면서 이 논의가 시작됐는데……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김재원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거고요.

○**소위원장 임오경** 예, 그것은 통과가 됐어요.

○**배현진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의신청에 관해서 종목단체가 할 수 있느냐로 지금 온 거잖아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아까 얘기하다 말고 이것을 넘어갔어요, 보류를 시켜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두 가지 발의된 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이 법안이 따로따로 실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병합해서 문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이 이의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재심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신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다 동의가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징계요구 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문체부로 오기 전에 그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재심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한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달라서 이의신청과 재심의는 좀 다릅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저희들이 심사하기에 참 불편하게 돼 있어요.

○**김재원 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민형배 위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법률 개정안 그 조항을 놓고 국민체육진흥법 몇 조인데 여기에 이분이 이런 것을…… 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놔야 그 조항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고 또 그 조항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 중심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가 알아먹기가 힘들어서 이대로 심사하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김재원 위원** 오늘 내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정해야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지금 정부 측에서 또 전문위원이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민형배 위원** 사전에 좀 상의하셨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듣고 있는 내내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도……

○**민형배 위원** 지금 2시간 반이나 됐는데 조금 쉬고 할까요?

○**배현진 위원** 환기 좀 시킬까요? 여기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요, 이 부분 이제 다 끝나 갑니다, 지금 사항까지는.

○**배현진 위원** 5분만 쉬시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이것만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지요.

정부 측은 이해하셨지요, 지금 다 나열된 법안에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중복되는 사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홍필** 전문위원실과 협의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몇 분 쉬시렵니까? 쉬시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할 사항만 딱딱……

○**배현진 위원** 정리하시기 전에, 아까 횡회 의원님의 윤리센터 조사 이의신청 절차 신설하는 법안을 저희가 이미 다 동의해서 하기로 했지요?

○**민형배 위원** 예.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민형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앞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로, 지금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위원님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기 전에 거기까지, 보조금 미지급에 가기 전까지 종목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산으로 온 건데 그 부분을 좀 저희에게 쉬는 동안 말씀하게 순서대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 신동욱 의원님 안 제22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로 인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인데 오른쪽 표에 보시면 개정안 내용에 실태조사, 연구·조사, 교육·훈련,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기금의 사용 용도에 포함하자는 내용인데 현행 기금에 스포츠 윤리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포츠윤리센터 사업 조항에 실태조사, 연구, 예방교육, 법률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개정 실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종오 위원** 이게 중복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진종오 위원 중복된다 그러면……

○소위원장 임오경 이게 신동욱 의원안의 개정안과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제18조의3제3항과 개정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이 좀 안 갑니다. 기존의 법조항과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전문위원님, 법조문 정리해 놓은 그건 몇 쪽에 있습니까? 조문자료 뒤쪽에……

○전문위원 전완희 78쪽에 의원님 안이, 이렇게 네 가지를 추가로 넣자는 안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몇 조입니까, 이게? 22조(기금의 사용 등), 22조 11호의 4·5·6·7 이겁니까?

○전문위원 전완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11호의4부터 11호의7까지 현행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지금 수정안에 이걸 새로 넣자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3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직무에 다 포함돼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된다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3이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18조의3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관련 조항에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그다음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 연구, 이렇게 윤리센터의 임무가 나열돼 있고요. 22조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처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의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1항·2항·3항, 3항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 1호부터 2·3·4·5·6·7호 이렇게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2·5·6·7호가 다……

○민형배 위원 2·5·6·7호가 지금 발의된 개정안과 중복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미란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와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배현진 임오경 진종오

○출장 위원(1인)

김승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전완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체육국장 강수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